

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-158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4월 18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

- 고유번호 “2022-1-1099”란부터 “2022-1-1109”란까지 신설

- 고유번호 “97-1-5”란, “97-1-21”란, “97-1-45”란, “97-1-46”란, “97-1-91”란, “97-1-92”란, “97-1-96”란, “97-1-119”란, “97-1-132”란, “97-1-182”란, “97-1-198”란, “97-1-209”란, “97-1-212”란, “97-1-218”란, “97-1-240”란, “97-1-271”란, “97-1-277”란, “97-1-278”란, “97-1-311”란, “97-1-315”란, “97-1-334”란, “97-1-345”란, “97-1-376”란, “97-1-410”란, “97-1-411”란, “97-1-432”란, “97-1-436”란, “97-1-451”란, “97-1-472”란, “99-1-499”란, “2001-1-515”란, “2001-1-516”란, “2008-1-577”란, “2010-1-611”란 및 “2012-1-646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

나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, 유해화학물질의 표시,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45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 - 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103호, 2021. 12. 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“97-1-5”란, “97-1-21”란, “97-1-45”란, “97-1-46”란, “97-1-91”란, “97-1-92”란, “97-1-96”란, “97-1-119”란, “97-1-132”란, “97-1-182”란, “97-1-198”란, “97-1-209”란, “97-1-212”란, “97-1-218”란, “97-1-240”란, “97-1-271”란, “97-1-277”란, “97-1-278”란, “97-1-311”란, “97-1-315”란, “97-1-334”란, “97-1-345”란, “97-1-376”란, “97-1-410”란, “97-1-411”란, “97-1-432”란, “97-1-436”란, “97-1-451”란, “97-1-472”란, “99-1-499”란, “2001-1-515”란, “2001-1-516”란, “2008-1-577”란, “2010-1-611”란 및 “2012-1-646”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고유번호 “2021-1-1084”란 다음에 “2022-1-1099”란부터 “2022-1-1109”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97-1-5	글루타르알데히드[Glutaraldehyde; 111-30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1	디-n-부틸아민[Di-n-butylamine; 111-92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45	디이소시아산이소포론[Isophoronediiisocyanate; 4098-71-9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97-1-46	디이소시아산 헥사메틸렌[Hexamethylene diisocyanate; 822-06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91	무기아연 염류[Inorganic zinc, salts] 및 이를 25% 이상(<u>붕산아연의 경우 0.3% 이상</u>) 함유한 혼합물. 탄산 아연(Zinc carbonate) 및 뇌산 아연(Zinc fulminate)은 제외
97-1-92	무기은 염류[Inorganic silver, salts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96	발연황산[Fuming sulfuric acid; 8014-95-7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119	비소[Arsenic; 7440-38-2] <u>와 그 화합물 및 이를</u>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132	삼염화 인[Phosphorus trichloride; 7719-12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182	알릴 알콜[Allyl alcohol; 107-18-6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198	염소산 염류[Chloric acid, salts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<u>다만, 염소산 나트륨[Sodium chlorate; 7775-09-9] 및 염소산 칼륨[Potassium chlorate; 3811-04-9]의 경우 이를 25%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</u>
97-1-209	염화 황[Sulfur chloride; 10025-67-9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12	오산화 인[Phosphorus pentoxide; 1314-56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18	옥시염화 인[Phosphorus oxychloride; 10025-87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40	<u>백린</u> [White phosphorus; 12185-10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71	<u>크롬산[Chromic acid; 7738-94-5]과 그 염류</u>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77	클로로술폰산[Chlorosulfonic acid; 7790-94-5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278	클로로아세트산[Chloroacetic acid; 79-11-8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311	트리페닐포스핀[Triphenylphosphine; 603-35-0] 및 이를 10% 이상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	함유한 혼합물
97-1-315	티람[Thiram; 137-26-8] 및 이를 <u>2.5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334	페닐렌디아민[Phenylenediamine; 25265-76-3]과 그 염류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<u>다만, p-페닐렌디아민[p-phenylenediamine; 106-50-3] 및 그 염산염의 경우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u>
97-1-345	포르말린[Formalin; 50-00-0](<u>파라포름알데히드(Paraformaldehyde)를 포함한다</u>)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<u>0.1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376	플루오로규산[Fluorosilicic acid; 16961-83-4]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<u>다만 나트륨,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(16893-85-9, 16871-90-2, 16949-65-8)의 경우 이를 25%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</u>
97-1-410	히드라진 수화물[Hydrazine hydrate] 및 이를 <u>0.1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411	히드록실아민[Hydroxylamine; 7803-49-8]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<u>10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432	1,1'-메틸렌비스[4-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][1,1'-Methylenebis[4-isocyanatocyclohexane]; 5124-30-1] 및 이를 <u>1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436	2-n-부틸-벤조[d]이소티아졸-3-온[2-n-Butyl-benzo[d]isothiazol-3-one; 4299-07-4] 및 이를 <u>2.5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451	N-알킬 톨루이딘[N-Alkyl toluidine]과 그 염류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<u>다만, N,N-디메틸-p-톨루이딘[N,N-Dimethyl-p-toluidine; 99-97-8]의 경우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u>
97-1-472	4-메르캡토메틸-3,6-디티아-1,8-옥탄디티올[4-Mercaptomethyl-3,6-dithia-1,8-octanedithiol; 131538-00-6] 및 이를 <u>25%</u> 이상 함유한 혼합물
99-1-499	퍼메트린[Permethrin; 52645-53-1] 및 이를 <u>1% 이상 함유한 혼합물</u>
2001-1-515	노닐페놀류[Nonylphenols; 25154-52-3, 104-40-5, 84852-15-3, 139-84-4, 136-83-4]와 4-tert-옥틸페놀[4-tert-Octylphenol; 140-66-9] 및 그 중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	하나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01-1-516	디메틸디치오카바미산 나트륨[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; 128-04-1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08-1-577	이황화 비스(2,3-에피티오프로필)[Bis(2,3-epithiopropyl) disulfide; 98485-71-3] 및 이를 2.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0-1-611	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[Toluene diisocyanate; 26471-62-5, 584-84-9, 91-08-7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12-1-646	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[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; 7173-51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099	9,9-비스(4-히드록시페닐)플루오렌[9,9-Bis(4-hydroxyphenyl)fluorene; 3236-71-3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0	디카르보닐(n 5-2,4-사이클로펜타디엔-1-일)코발트[Dicarbonyl(n 5-2,4-cyclopentadien-1-yl)cobalt; 12078-25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1	2,4,8,10-테트라옥사-3,9-디티아스피로[5,5]언데칸 3,9-디옥사이드[2,4,8,10-Tetraoxa-3,9-dithiaspiro[5.5]undecane 3,9-dioxide; 3670-93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2	N-(2-에틸헥실)-N'-페닐-1,4-벤젠디아민[N-(2-Ethylhexyl)-N'-phenyl-1,4-benzenediamine; 82209-88-9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3	4-메톡시-N-페닐-o-톨루이딘[4-Methoxy-N-phenyl-o-toluidine; 41317-15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4	잔사, 연료유[Fuel oil, residual; 68476-33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5	N,N-디옥타데실아닐리늄 테트라키스(펜타플루오로페닐)보레이트[N,N-Dioctadecylanilinium tetrakis(pentafluorophenyl)borate; 462629-01-2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6	4-메르캡토펜놀[4-Mercaptophenol; 637-89-8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7	4-브로모- α,α,α -트리플루오로-m-톨루이딘[4-Bromo- α,α,α -trifluoro-m-toluidine; 393-36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8	1,4-디브로모-2,5-비스(트리플루오로메틸)벤젠[1,4-Dibromo-2,5-bis(triflu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	oromethyl)benzene; 2375-96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109	(±)-노르니코틴[(±)-Nornicotine; 5746-86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·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 관리법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.

제3조(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

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 정보가 변경되는(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)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